

대통령령 제 호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전문기관 지정)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
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
4. 「통계법」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원별 수급통계 작성기관을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설>		<u>제15조의2(전문기관 지정)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</u> <u>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</u> <u>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</u> <u>4. 「통계법」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</u> <u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원별 수급통계 작성기관을 정하여 고시한다.</u>		
	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127